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8월 26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8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년 9월 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청소과장 서근필)

가. 제안이유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규정되고,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10호, 2006. 9. 27. 공포, 2007. 9. 28.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가.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과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

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

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전부 및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조제1항 및 별표)

다.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하되, 공공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사육하는 가축,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등 일부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예외 규정을 둠.(안 제4조제2항)

라. 시장은 일부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방류수수질기준 이상의 가축분뇨의 방류 및 소음·악취발생, 자연경관 훼손 등 생활 환경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축사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축사의 이전이 완료된 장소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개가 새로이 규정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여 분쟁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반상회보 및 각종 홍보지를 통해 사전 홍보를 하겠음.
○개 사육시 애완용 및 방범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규칙에 정해 운영하여 시민들의 분쟁 소지를 없애 주시기 바람?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동물인 소·돼지·말·닭·젓소·오리·양·사슴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계획에는 영 제3조 및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②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도계장, 부화장 안에 부설된 계류장
4.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 등으로 사육하는 1마리 이하의 소·말·젓소 및 사슴, 3마리 이하의 돼지 및 양, 5마리 이하의 닭 및 오리
5. 제4호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이 낳은 새끼(이 경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6.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 ③ 시장은 일부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규칙 제11조제1항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류수수질기준 이상의 가축분뇨의 방류 및 소음·악취발생, 자연경관 훼손 등 생활환경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이 완료된 장소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가축사육제한구역(제4조 관련)

구 분	제한구역의 표시		비 고
전 부 제한구역	원미구 관 할	심곡동, 원미동, 소사동, 도당동, 약대동, 중동, 상동	녹지지역 제외
		역곡동, 춘의동	
	소사구 관 할	심곡본동, 소사본동, 송내동	녹지지역 제외
		범박동, 괴안동, 옥길동, 계수동	
	오정구 관 할	원종동, 삼정동, 내동	녹지지역 제외
여월동, 작동, 고강동, 오정동, 대장동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일부제한지역 중에서 축사의 이전이 완료된 장소			
일 부 제한구역	원미구 관 할	역곡동, 춘의동	녹지지역만 해당
	소사구 관 할	범박동, 괴안동, 옥길동, 계수동	
	오정구 관 할	여월동, 작동, 고강동, 오정동, 대장동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94호
의결 년월일	2008. 9. 10 (제146회)

제출년월일 : 2008. 8. 26.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규정되고,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10호, 2006. 9. 27. 공포, 2007. 9. 28.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과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
- 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전부 및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조제1항 및 별표)
- 다.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하되, 공공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사육하는 가축,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등 일부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예외 규정을 둠.(안

제4조제2항)

라. 시장은 일부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방류수수질기준 이상의 가축분뇨의 방류 및 소음·악취발생, 자연경관 훼손 등 생활 환경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축사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축사의 이전이 완료된 장소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동물인 소·돼지·말·닭·젓소·오리·양·사슴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계획에는 영 제3조 및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②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도계장, 부화장 안에 부설된 계류장
4.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 등으로 사육하는 1마리 이하의 소·말·젖소 및 사슴, 3마리 이하의 돼지 및 양, 5마리 이하의 닭 및 오리
5. 제4호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이 낳은 새끼(이 경우 분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6.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 ③ 시장은 일부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규칙 제11조제1항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류수수질기준 이상의 가축분뇨의 방류 및 소음·악취발생, 자연경관 훼손 등 생활환경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이 완료된 장소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가축사육제한구역(제4조 관련)

구 분	제한구역의 표시		비 고
전 부 제한구역	원미구 관 할	심곡동, 원미동, 소사동, 도당동, 약대동, 중동, 상동	
		역곡동, 춘의동	녹지지역 제외
	소사구 관 할	심곡본동, 소사본동, 송내동	
		범박동, 괴안동, 옥길동, 계수동	녹지지역 제외
	오정구 관 할	원종동, 삼정동, 내동	
		여월동, 작동, 고강동, 오정동, 대장동	녹지지역 제외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일부제한지역 중에서 축사의 이전이 완료된 장소			
일 부 제한구역	원미구 관 할	역곡동, 춘의동	녹지지역만 해당
		소사구 관 할	
	오정구 관 할		

(폐지 조례)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정 1994. 12. 31 조례 제1316호
개정 1997. 05. 20 조례 제1507호
개정 1998. 04. 01 조례 제1572호
개정 1999. 07. 29 조례 제1663호
개정 1999. 07. 29 조례 제1680호
개정 1999. 12. 01 조례 제1705호
개정 2000. 01. 15 조례 제1718호
개정 2001. 07. 27 조례 제184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행"이라 함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2001.7.27>
3.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젓소·말·닭·오리·양 및 사슴을 말한다. 다만, 애완동물, 조류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1.7.27>
4.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5. "제한사육"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분뇨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처리기본계획 수립) ①시장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수립하는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영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수집 의무지역) 분뇨수집 의무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의무지역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2장 오수 및 분뇨의 처리

제9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시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지역별로 일정을 고려하여 분뇨를 적정하게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제10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대행) ①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를 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를 하는 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3장 수수료등의 징수

제12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운반·처리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1. 분뇨

분뇨수집수수료는 " 별표 1"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정화조오니

오수처리시설등의 오니청소수수료는 " 별표 2"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정화조 청소업자가 청소하는 때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처리장 처리비

수집된 분뇨 및 오니를 분뇨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분뇨 및 오니의 수집·운반시 배출자로부터 1리터당 1원씩 처리장처리비로 수집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자별로 계산한 금액에 10원미만이 있을 때 원단위는 절사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 및 처리비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13조(분뇨처리장 처리비 징수방법등) ①처리장 처리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위생처리 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1ml당 1원을 징수한다. 이 경우 납부할 처리비 계산금액에 10원미만이 있을 때 원단위는 절사한다.

1.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처리장 처리비의 납부는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정화조청소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처리장 처리비를, 기타의 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처리장 처리비는 하수정화사업소에서 매월 통보하는 업체별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 실적에 의거 전산부과, 징수한다.

제14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분뇨처리장처리비 감면)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장 처리비를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장 처리비를 대행업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비용의 교부) 시장은 분뇨 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분뇨처리장 처리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의 질문검사권) ①시장은 분뇨처리등 관련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분뇨관련영업자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열람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분뇨관련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나 조사상 필요에 의해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와 물건등의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제4장 축산폐수의 처리

제19조(축산시설의 관리) 시장은 관할구역안의 가축사육시설(이하 "축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년1회이상 사육종별, 사육시설 규모 및 축산폐수처리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산시설의 배출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5장 가축사육의 제한

제2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시 전역으로 하되, 일부 및 전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다만, 가축사육은 일부제한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관할구역을 일부 및 전부제한 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 별표 3"과 같다.

제24조(축사의 유지관리)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그 축사를 항시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5조(축사의 이전조치등)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적용의 배제)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지역에서 행하는 경우와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일부 제한지역에서 행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 연구기관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산물 도·소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된 계류장
4.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등으로 사육하는 1마리 이하의 소·젓소·사슴·말, 3마리 이하의 돼지·양, 5수이하의 닭·오리
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하는 가축이 낳은 새끼(이 경우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처분

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2001. 7. 27>

제6장 분뇨관련영업 허가등

제28조(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분뇨의 처리능률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년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기준 준수 실태
2.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업무 수행의 적정여부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계법규에서 정한 준수사항등의 이행여부

제7장 벌칙

제2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0조(의견진술)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1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삭제>

제33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관할 법원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5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6조(행위위탁) 인접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등에 대한 수집·운반 및 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 삭제

제3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및 사용료, 과태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정한다.

제39조(수수료의 부과·징수) 이 조례에서 정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부천시 물가상승률에 의거 부천시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매년 조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4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994. 12. 31 조례 제1316호>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유료변소의 경과조치) 종전의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변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변소는 이 조례에 의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부천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 부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등에 의하여 행한 고시, 승인,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6. 7. 18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5. 20 조례 제1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4. 1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7. 29 조례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2. 1 조례 제1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 15 조례 제1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7. 27 조례 제1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